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2. 丙의 A가 乙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유무

(1)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방법 및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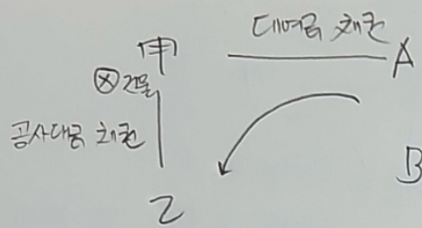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2) 대위채권자의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따라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 그리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 역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이다.

3.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우선 甲은 A가 제기한 위 채권자대위소송의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으로써 A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甲에 대한 처분권 제한의 효력이 생겼고 따라서 A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B가 그 이후에 피대위채권인 甲의 乙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받은 전부명령은 모두 무효이다. 그러나 이와 관계없이, A가 乙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것은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A가 乙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따라서



2013. 8. 10 B채권 & 전령 2 통지
2013. 8. 13 2통지 Z → A
2013. 10. 11 丙 A 채권 1억 전령
2014. 4. 3 2통지 (2통지)

11/11 (하)
정 이 해
영

Case 56. [대판 2016.8.29, 2015다236547]

<기본적 사실관계>

乙은 甲과 자신의 토지 위에 X 건물의 신축을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甲은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다.

<문제>

甲에 대하여 대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A는 甲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乙은 A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판결은 2013. 8. 13. 확정되었다. 甲은 위 소송의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다. 한편, B는 甲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3. 8. 10. 甲의 乙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乙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반면 丙은 A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3. 10. 11. A가 乙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乙에게 송달된 후 2014. 4. 3. 확정되었다. 乙은 B와 丙을 상대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였다. 乙의 청구는 인정될 수 있는가? (15점)

I. 결 론

①

II. 근거

1. B의 피대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유무

(1) 제405조 제2항의 처분금지(제한)의 효력

- ① 대위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05조 제2항). 즉,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무자의 처분권이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채무자의 처분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채권자에 의한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피대위권리의 상실 때문)이 되므로 이를 금지하지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또한 통지가 없었더라도 대위권 행사를 채무자가 알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②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

대위채권자의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 권능에 대한 압류 명령 등은 무효이다. 그리고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 역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

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이다.